

[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]

□ 신청서식

- └① 의료비지원 신청서
- └② 소득·재산 신고서
- └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└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환자용)
- └⑤ 소득·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
□ 구비서류

- └⑥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, 환자 기준으로 발급)
- └⑦ 소득관계서류
 - | - 자영업만 제출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신고서 중 해당 서류(무인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가능)
- └⑧ 재산관계서류
 - | - 자가: 제출 없음(공시지가로 확인)
 - | - 전·월세: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, 인적사항, 보증금, 계약기간 표시), 사용대차확인서 중 해당 서류
 - | - 자영업: 상가임대계약서
- └⑨ 진단서 원본(해당질환이 최종진단/주상병/지원대상 질환이어야 함. 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└⑩ 통장 사본(환자 본인 /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가능)
- └⑪ 장애정도 확인 서류(해당자에 한함,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)

※ ①,②,③,④,⑤ 신청서식은 정해진 해당 양식에 작성
(보건소 홈페이지 및 '희귀난치헬프라인'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※ ②,③,⑤,⑥,⑦,⑧ 구비서류는 부양의무자도 모두 제출(소득재산조사 위함)

□ 소득 · 재산 기준(2023)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	1인	2인	3인	4인	5인
환 자 가 구	소득(120%)	2,493,470	4,147,386	5,321,779	6,481,157	7,596,826
	소득(130%)	2,701,260	4,493,002	5,765,261	7,021,253	8,229,894
	재산(120%)	221,795,453	261,457,698	289,620,604	317,423,424	344,178,072
	상향소득(160%)	3,324,627	5,529,848	7,095,706	8,641,542	10,129,101
	상향재산	739,318,177	871,525,659	965,402,014	1,058,078,082	1,147,260,240
부 양 의 무 자 가 구	소득(200%)	4,155,784	6,912,310	8,869,632	10,801,928	12,661,376
	재산 (200%)	대도시	369,659,089	435,762,830	482,701,007	529,039,041
		중소도시	269,659,089	335,762,830	382,701,007	429,039,041
		농어촌	244,659,089	310,762,830	357,701,007	404,039,041
	상향소득(240%)	4,986,941	8,294,772	10,643,558	12,962,314	15,193,651
	상향 재산	대도시	887,181,813	1,045,830,791	1,158,482,417	1,269,693,698
		중소도시	647,181,813	805,830,791	918,482,417	1,029,693,698
		농어촌	587,181,813	745,830,791	858,482,417	969,693,698

① 대도시: 특별시와 광역시의 “구”, 특례시 ② 중소도시: 도의 “시”와 특별자치시·도 ③ 농어촌: 도의 “군”

-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환자는 기준 중위소득 130% 미만으로 기준 적용함.
- 재산: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 + 금융재산(적금, 주식, 펀드, 연금저축, 보험증권, 연금보험 등) + 차량가액 - 부채
- 조사면제 ① 1가구 2환자 이상인 자(1인만 지원)
 - ② 혈우병 환자(입원특례자, 항체양성환자, HIV감염자)
 - ③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간병비,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받는 자
- 기준상향조정 ① 혈우병, 고혈병, 파브리병, 뮤코다당증(환자가구, 부양의무자가구 상향 적용)
 - ② 1가구 2환자 이상(환자가구에만 추가 1인당 소득·재산기준 1.5배 적용)

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

☎02-860-2039, 팩스 02-860-8134